

# 중소기업 *focus*

##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2015 세법개정에 따른 주요내용

1

### 하나.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및 시행

#### 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

-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을 규정한 ‘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이 지난 7월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, 8월 4일(화)부터 시행.
- 이번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은,
  - 산업간·업종간 융복합을 통해 창조성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유망한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고 있는 교육서비스, 전자상거래, 핀테크 등 산업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,
  - 창의성 및 전문성이 발현되는 분야를 확대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 촉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창조경제 구현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
- 향후 중소기업청에서는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규 유망 업종 현황 등을 매년 파악하고, 제외대상 업종 중에서 삭제가 필요한 경우 적극 반영할 계획임

#### ■ 개정안의 주요 내용

- 이번 시행령 개정은, 지난 2월(‘15. 2. 3) 개정·공포된 1인 창조기업법 개정 내용의 후속조치로서
  -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일부 업종만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
-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업종은 법률에 규정된 부동산업을 포함하여, 시행령으로 정하는 담배제조업, 임대업, 음식점업 등 32개 업종(중분류)으로 국한됨
- 제외업종 선정은 창조기업 특성 및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됨
  - 제외대상 업종 선정 기준(연구용역) : 창조기업의 특성(R&D 비율, 지재산 활용 및 개발 수), 국민경제 기여도(부가가치 유발계수, 전후방 연쇄효과), 1인 기업 비율
- 이번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함된 지원대상 업종은 교육서비스업, 전자상거래업, 핀테크 관련 등 205개 업종(세세분류)이며, 해당 업종에 속한 15만 7천개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누리게 됨

〈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 및 기업수 〉

구분	개정 전(A)	개정 후(B) (‘15.8.4 이후)	증감(B-A)
업종수 (세세분류 기준)	434개	639개	205개
기업수(1인 기업)	92천개	249천개	157천개

- 이로써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에 속한 기업은 ‘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’ 입주, 전용 기술개발(R&D)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

●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

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도 근로자,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편됨(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)

구분	해당 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)
광업	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(05), 금속광업(06) 비금속광물 광업; 연료용 제외(07), 광업지원서비스업(08)
제조업	담배제조업(12),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(19), 1차 금속 제조업(24)
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	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(35), 수도사업(36)
하수·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	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(37), 폐기물 수집운반, 처리 및 원료재 생업(38), 환경 정화 및 복원업(39)
건설업	종합건설업(41), 전문직별 공사업(42)
도매 및 소매업	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(45), 도매 및 상품중개업(46) 소매업; 자동차 제외(47)(전자상거래업은 제외)
운수업	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(49), 수상 운송업(50) 항공 운송업(51),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(52)
숙박 및 음식점업	숙박업(55), 음식점 및 주점업(56)
금융 및 보험업	금융업(64), 보험 및 연금업(65),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(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(66)
부동산업 및 임대업	부동산업(68), 임대업; 부동산 제외(69)
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보건업(86), 사회복지 서비스업(87)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(91)
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	기타 개인 서비스업(96)

비고: 업종의 분류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

## 2. 2015 세법 개정에 따른 청년일자리 및 수출기업지원 제도

■ 개정안은 8. 7 ~ 8. 26일 20일간 입법예고 후 9. 1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

● 청년고용증대제 신설(조특법 §29의5 신설)

〈개정이유〉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청년 고용절벽 완화

〈적용시기〉 '15. 12.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(지원의 시급성을 감안)

현행	개정안
〈신설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적용대상 : 모든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● 적용요건 :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</li> <li>● 공제금액 :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× 500만원(대기업은 250만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</li> <li>· 현행 「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」 (§30의4) 동시적용</li> </ul> </li> <li>● 적용기한 : '17. 12.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까지</li> </ul>

-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(대기업 250만원) 세액공제 신설 (3년간 시행)

- 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로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지원

●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(조특법 §30)

〈개정이유〉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지원

〈적용시기〉 '16. 1. 1.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

-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, 고령자,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3년간 50% → 70%로 인상하여 '18. 12. 31일까지 적용
- 청년 등 고용 인원이 증가하더라도 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완화
  - (소기업) 소득세·법인세 10 ~ 30% 감면 (중기업) 5 ~ 15% 감면
  - (현행) 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 → (개정) 매출액 기준

현행	개정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기간 : 최초 취업일부터 3년</li> <li>● 대상 :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, 고령자,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,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에도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● 감면율 : 50%</li> <li>● 적용기한 : '15. 12. 31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좌 등)</li> <li>● (좌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,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화</li> </ul> </li> <li>● 감면율 : 70%(한도 150만원)</li> <li>● 적용기한 : '18. 12. 31.</li> </ul>

●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에 대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(법인령 §93㉔)

- (현행) 임금증가액의 1.0배 → (개정)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의 경우 1.5배
-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(A, B중 선택)
  - ㉔ [당기 소득 × 80% - (투자+임금증가+배당액등)] × 10%
  - ㉕ [당기 소득 × 30% - (임금증가+배당액등)] × 10%

현행	개정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 (A, B중 선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㉔ [당기 소득 × 80% - (투자+임금증가+배당액등)] × 10%</li> <li>㉕ [당기 소득 × 30% - (임금증가+배당액등)] × 10%</li> </ul> </li> <li>■ 임금증가액 계산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임원, 고액연봉자 등 제외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좌 등)</li> <li>■ 청년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에 가중치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청년상시근로자*의 근로소득 증가액 × 1.5 + 그 외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 × 1.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5 ~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</li> <li>·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
● 기업의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(조특법 §104의18, 조특령 §104의17)

〈개정이유〉 청소년의 취업 전 직업교육 지원 강화  
 〈적용시기〉 '16. 1. 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현행	개정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기업이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R&amp;D 세액공제(2~25%) 적용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대학교</li> <li>● 특성화고, 마이스터고,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 〈추 가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적용대상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좌 등)</li> <li>●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·과정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</li> <li>● 고등기술학교</li> </ul> </li> </ul>

- 청년의 취업전 교육 지원을 위해 기업이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(2 ~ 25%) 적용대상\*에 고등기술학교 등을 추가
  - 현재 대학교, 특성화고, 마이스터고 등에 적용 중

- **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5)**  
 <개정이유> 중소기업 투자 촉진  
 - 적용기한 연장하되, 상장기업 우대공제율은 일몰종료  
 · 적용기한 3년 연장 : '15. 12. 31. → '18. 12. 31.  
 - 신규상장 중소중견기업 우대공제율은 기업간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일몰 종료  
 · '15. 12. 31 이전에 상장한 기업은 이후 3년간 4% 공제가능
- **신성장동력산업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10)**  
 - 적용기한 : '15. 12. 31. → '18. 12. 31.
- **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12)**  
 - 적용기한 : '15. 12. 31. → '18. 12. 31.
- **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64)**  
 <개정이유> 농어촌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
 - 지원내용 : 소득세·법인세 5년간 50% 감면  
 - 적용기한 연장 : '15. 12. 31. → '18. 12. 31.
- **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(부가법 §50의2 신설)**  
 <개정이유>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 
 <적용시기> '16. 7. 1.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
 -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유예  
 ·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가 최소 40일 이상 유예되어 자금 활용이 가능

현 행	개 정 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업자가 재화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 납부</li> </ul> </li> </ul> <p>&lt;신 설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좌 동)</li> <li>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적용대상 :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수출 중소기업의 요건은 매출대비 수출비중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 규정</li> </ul> </li> <li>● 적용방법 : 재화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고,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납부유예된 세액과 매입세액공제액 상계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
- **관세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확대(관세환급특례법 §9①, 시행령 §9의2 신설)**  
 <개정이유> 수출지원 및 관세환급제도 합리화  
 <적용시기> '16. 1. 1. 이후 수출하는 분부터 적용  
 -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기간을 최대 2년 → 3년으로 확대
- **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(관세규칙 §46④)**  
 <개정이유> 중소·중견기업의 투자 촉진 지원  
 - 중소기업 30% 감면  
 · '15. 12. 31.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50%감면 → '16. 12. 31.까지  
 - 중견기업 : '15. 12. 31.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50% 감면 → '16. 12. 31.까지

◆ 본 자료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소식과정보(발간책자)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발행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
 발행인 윤종일  
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 
 광교로 107  
 홈페이지 www.gsbc.or.kr  
 자료문의 평가조사실  
 031-259-7365

「중소기업 포커스」는 경기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정보 자료로,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